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49건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해제하는 등 총 16개의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2025. 1. 6. ~ 2026. 2. 19.) 예정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제1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
일”을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6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의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7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점도 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1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제3호, 제6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 제21호, 제24호, 제26호, 제27호 및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제57조의16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삭 제></u>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 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 준	<삭 제>
2.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건 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 <u>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u> ----- ----- -----.
1. <u>제14조의3 및 별표 2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2017년 1월 1일</u>	<u><삭 제></u>
2. <u>제14조의7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3에 따른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2023년 1월 1일</u>	<u><삭 제></u>
3. <u>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u>	<u><삭 제></u>
4. <u>제16조에 따른 복구비예치: 2017년 1월 1일</u>	<u><삭 제></u>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 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7년 1월 1일	<삭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1. 제13조에 따른 경영 등의 위탁·수탁신고</u> <u>2. 제2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u>	<u><삭 제></u>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조성토 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에</u>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 ----- <u>제18조에 따른 접도구</u> <u>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u> ----- ----- ----- -----.
1. <u>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u> <u>허용되는 행위의 종류</u>	<u><삭 제></u>
2. <u>제31조에 따른 준공도면을</u> <u>제출해야 하는 일반매설물의</u> <u>종류</u>	<u><삭 제></u>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 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 다.	<삭 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제4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 널사업의 등록신청	<삭 제>
2.·3. 삭 제	
4.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삭 제>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 장관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에</u>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 <u>제20조 및 별표 1에 따</u> <u>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u> ----- ----- ----- ----- -----.
3. <u>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u> <u>교육기관의 지정요건</u>	<u><삭 제></u>
4. <u>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u> <u>업정지처분 세부기준</u>	<u><삭 제></u>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u> <u>2014년 1월 1일</u> <u>2.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삭제>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삭제>
7. 삭제	
8. ~ 11.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제30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삭제>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14. 제41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	<삭제>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16.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	<삭제>

<u>까지, 제55조 및 제56조에 따</u> <u>른 운전자격제도의 운영</u> 17. ~ 19. (생 략) <u>20. 제63조에 따른 자동차대여</u> <u>사업의 영업구역 등</u> <u>21. 제6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u> <u>사업계획의 변경등록</u> 22. · 23. (생 략) <u>24. 제79조에 따른 사용약관의</u> <u>신고</u> 25. (생 략) <u>26. 제81조에 따른 여객자동차</u> <u>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u> <u>27. 제84조에 따른 여객의 혼잡</u> <u>방지 등</u> 28. (생 략) 29. 삭 제 <u>30. 제9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u> <u>31. 제96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u> <u>립</u> <u>32. 제10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u> <u>차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u> 33.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22. · 23. (현행과 같음) <u><삭 제></u> 25.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28.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33. (현행과 같음)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1. 삭제	
1의2. (생략)	1의2. (현행과 같음)
2.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삭제>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 7. 삭제	
8. 제57조의13부터 제57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 기준·절차 등	8. 제57조의16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9. 삭제	
10. 제68조에 따른 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 등	<삭제>
11. 제73조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삭제>
12. ~ 19. (생략)	12. ~ 19.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제6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u> <u>2.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u> <u>3.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u> <u>4. 제2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신청</u>	<u><삭 제></u>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방 법·절차·합격기준 등	<삭 제>
2. 제16조에 따른 적성검사 방 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	<삭 제>
3. 삭 제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